

문서번호	행정지원과-29329
결재일자	2014.10.2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인사담당	행정지원과장	행정국장	부구청장	
허성재	윤이남	김진동	손정수	10/20 김병환	
협 조	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담당 주무관		이용식 김용환 김하연		

**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
인사관리 규칙」 폐지규칙안**

2014. 10.

**행 정 국
행정지원과**

『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』 폐지규칙안

기능직·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 및 「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」 폐지에 따라, 이를 근거로 하는 자치법규(규칙)을 폐지하고자 함

1 **관계 법령**

- 『지방공무원법』 <법률 제11531호, 시행 2013.12.12.>
- 『지방공무원 임용령』 <대통령령 제24853호, 시행 2013.12.12.>
- 『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』 <대통령령 제24853호, 시행 2013.12.12.>

2 **현황 및 폐지근거**

- 「지방공무원법」 **기능직과 계약직 폐지 및 일반직으로 통합**
 - 제2조(공무원의 구분)제2항제3호(기능직공무원) : 삭제
 - 제2조(공무원의 구분)제3항제3호(계약직공무원) : 삭제
 - 부칙 제4조제1항·제3항(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
- 「지방공무원 시행령」 **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**
 - 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
 - 제21조의3(임용절차), 제21조의4(근무기간) 등
- 「지방공무원 시행령」 **부칙 제2조 :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 폐지**

→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,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」 폐지가
타당

3

주요 내용

-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 폐지에 따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」 폐지

■ 입법예고 생략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2호 :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에 위한 경우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 :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
4

추진 일정

■ 입법예고 생략

- 법제심사 : '14. 10월 중
-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'14. 11월 중
- 공포 : '14. 12월 ~

붙임 : 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폐지 규칙안 1부.
2. 타구 개정현황 1부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 규칙 폐지규칙안

1. 폐지이유

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,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이 개정되고, 이에 따른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이 폐지됨에 따라, 이를 근거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」을 폐지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이 폐지됨에 따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, 부칙(제11531호) 제6조
- 2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부칙(제24853호)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 : **생략** 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폐지규칙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관계법령 발췌문>

□ 지방공무원법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>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3. 삭제 <2012.12.11>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>

1. 정무직공무원

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
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12.11>

4. 삭제 <2011.5.23>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1.5.23, 2012.12.11>

[전문개정 2008.12.31]

부칙 <법률 제11531호, 2012.12.11>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후단 중 "계약직 지방공무원"을 "임기제 지방공무원"으로 한다.

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)"를 "[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]"로 한다.

제17조제2항 본문 중 "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"을 "일반직 지방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"을 "일반직 지방공무원"으로 한다.

제45조제2항 중 "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"을 "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"으로 한다.

제49조제1항 중 "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"을 "일반직 지방공무원"으로 한다.

제50조제3항 중 "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"을 "제30조의3"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 단서 중 "일반직지방공무원(연구직·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및 기능직지방공무원"을 "일반직 지방공무원(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66조의3제1항 중 "일반직·계약직·특정직"을 "일반직·특정직"으로 한다.

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중 "계약직공무원"을 "임기제공무원"으로 한다.

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4제4항 중 "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"을 "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제2항"으로, "지방계약직공무원"을 "지방임기제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계약직공무원"을 "임기제공무원"으로 한다.

⑤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제2항 단서 중 "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"을 "별정직공무원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"으로 한다.

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부칙 <제24853호, 2013.11.2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은 폐지한다.

자치구별 조례·규칙 폐지 현황

2014. 10. 1일 현재

연 번	자 치 구	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	지방계약직 공무원 관리규칙	비 고 (폐지일)
1	서 울 시	폐지	폐지	
2	종 로 구	폐지	폐지	
3	중 구			
4	용 산 구			
5	성 동 구	미정	미정	
6	광 진 구	일부개정 예정	폐지 검토중	
7	동 대 문 구	미정	폐지	
8	중 량 구	폐지 방침 수립중	폐지 방침 수립중	
9	성 북 구	미정	폐지 검토중	
10	강 북 구	폐지안 입법예고중	폐지안 입법예고중	
10	도 봉 구	미정	폐지	
11	노 원 구	미정	폐지	
12	은 평 구	폐지	폐지	
13	서 대 문 구	폐지	폐지	
14	마 포 구	폐지		
15	양 천 구	미정	미정	
16	강 서 구	폐지안 입법예고중	폐지	
17	구 로 구	폐지안 입법예고중	폐지 검토중	
18	금 천 구	일부개정	폐지	
19	영 등 포 구	미정	폐지	
20	동 작 구	폐지	폐지	
21	관 약 구	미정	미정	
22	서 초 구			
23	강 남 구		폐지	
24	송 파 구	폐지	폐지	
25	강 동 구	폐지	폐지	